부산우체국 공고 제2016-4호

2016년도 제1회 우체국택배원(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부산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 및 EMS 방문접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우체국택배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부산우체국장

1. 채용직종 : 우체국택배원(무기계약직)

채용직종	근무우체국명	채용인원	담당업무내용
우체국택배원 (무기계약직)	부산우체국	1명	-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 EMS 방문접수 - 기타 부대업무

2.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비공무원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우정직공무원 채용 시 우체국택배원 근무경력 우대

나. **보수** : 기본연봉 약 18,700천원 + 실적수당 등

o 기본연봉 :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명절상여금, 경평상여금

o 기타수당 : 가족수당, 장기근속장려수당

o 실적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 휴일), 상시출장여비 등

o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등

다. **근무일수 및 시간** : 주 5일(평일 월~금)

o 1일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 해당 우체국장이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로근무 또는 휴일근로근무를 할 수도 있음

※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에 대하여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라.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마. **우체국택배원 업무 특성**

o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 필요

o 택배 차량(수동형 1톤 탑차 포함)을 직접 운전

o 20kg 상당(최고 30kg)의 택배·EMS 우편물 등을 방문 접수하기 위한 체력 필요

o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불가

o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자격 및 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및 요 건
국 적	o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 불가
연 령	o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1998. 5. 3. 이전 출생자)
거주지	o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단, 출퇴근이 가능한 자)
운전면허	o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택배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2종 보통면허 중 '조건:A(자동)' 면허 소지자는 수동형 1톤 탑차 운전이 불가능하여 제외

※ 위 가, 나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다. 서류전형 우대요건

구 분	서 류 전 형 우 대 요 건
정보화 자격증	o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인터넷정보관리사3급
직무관련 경력	o 집배 및 집배보조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우편집중국, 우체국 등 우편물구분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 타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o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라. **최종 시험단계 적용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의 경우 동법 제31조에 따른 가점부여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o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심사 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무사고 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20점	10점	5점	5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위 서류전형 우대요건 '기타'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 직무관련 경력 환산 점수

직무관련 경력	환산경력 채점 기준			
집배 및 집배보조 업무 우편물택배 접수 및 배달경력	2년 이상	1년6월 이상	1년 이상	6월 이상
	20점	15점	10점	5점
우편집중국, 우체국 등 우편물구분 보조업무	2년 이상	1년6월 이상	1년 이상	-
	20점	15점	10점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요소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 상위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접 수 기 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6. 4. 27.(수) ~ 4. 29.(금)	2016.5.2.(월)	2016.5.3.(화)	2016.5.3.(화) 17:00 이후

가. **접수장소** : 부산우체국 지원과 (☎ 051-600-3022)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우편번호48931)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지원과
(봉투 겉면에 『우체국택배원 응시원서 재중 』 표시)

다. **접수 시 유의사항**

o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o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확인

라.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마.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우체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600/)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부착) 1부【붙임1】

o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 반명함판) 부착

나. **이력서** 1부【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4】

마.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발급) 1부

o 면허취득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도록 조회

바. **경력증명서** 1부(집배·집배보조·우편물구분보조 업무 근무경력자에 한함)【붙임5】

사.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2016.4.22.)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3일전까지 부산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600/),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기사항부존재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체국택배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우체국택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마.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우체국 지원과(☎ 051-600-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산우체국 주관 2016년 제1회 무기계약 우체국택배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부산우체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직종	무기계약 우체국택배원		(한자)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19 . . .		국적		
주 소 (주민등록주소)	(㉒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우체국택배원)채용시험		
응시직종	무기계약 우체국택배원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19 . . .			
2016년 월 일 부산우체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인력계획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붙임 2】

표 준 이 력 서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	지원분야	우체국택배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19 . . .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 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2. 교육사항				
직무관련 학교교육	최종학력 ☐ 고졸이하 ☐ 고졸 ☐ 대학 재학중 ☐ 대졸 ☐ 대학원 재학중 ☐ 대학원 수료 ☐ 대학원졸			
	전공		부전공	
직무관련 직업교육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3. 근무 경력사항 (채용우대 근무경력 및 우체국 근무경력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근무기간	기관(회사)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 고

4. 결격사유 존재 유무(있음인 경우 세부내역 해당여부 칸에 표시)		
	결격 사유 구분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미복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에 따른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이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후 그 선고유예 기간 중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이후 2년 미경과	☐
	징계 파면 처분 이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이후 3년 미경과	☐
	우정사업조직에서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이후 3년 미경과	☐

(뒷장)

5. 운전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6. 운전 경력사항 (다수일 경우 최근 발생일자부터 역순으로 기재)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발생일자	내역(면허종류)	발생일자	인적피해내역	발생일자	위반내용

7.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8.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9. 기타 사항

구 분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 2016. . . **지원자 :** **(인)**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우체국택배원
생년월일	19 . . . (남. 여)	응시분야	-

본인의 특성 및 강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상시계약집배원 모집에 지원한 동기	
상시계약집배원으로서의 포부	
2016.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印)	

【붙임 5】

경 력 증 명 서

제 2016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19 . .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근무부서 및 직위	담 당 사 무

근무년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년 월 일	종 류	처 분 청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 분 청
	. . .		

용 도	우체국택배원 채용 시험 응시 제출용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16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인)**

작성담당부서	
작 성 책 임 자	
작 성 담 당 자	
연락전화번호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